

선행학습영향평가 운영규정(3-5-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정상화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선행학습 요소를 배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입학전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학습”이라 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 고사”라 함은 입학전형에서 논술, 면접·구술고사, 인성검사 등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가 입학전형에서 시행하는 신입생 선발 고사를 말한다.
3. “선행학습금지”라 함은 대학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4. “선행학습영향평가”라 함은 대학 고사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자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3조(조직) ① 선행학습영향평가는 입학처 입학사정관실(이하 “사정관실”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사정관실에는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사정관실에는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이하 “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사정관실에서는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학습영향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정책연구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3장 위원회

제5조(설치)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내부위원 5인 이상과 외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

② 내부위원은 입학사정관 및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고교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2. 대학교사 출제자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교육
3. 대학교사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과 노력
4. 대학교사 문항 검토 및 분석·평가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8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시행한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및 공개사항을 공개 이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방법 및 절차

제11조(평가방법) 선행학습영향평가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대학이 운영하는 전체 대학교사 항목을 우선 제시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문항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류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이 되는 대학교사의 출제문항은 반드시 해당 학년도 신입생 적용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 의도와 근거, 문항 해설, 채점기준, 예시답안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한다.(개정 2018.04.25.)
3. 교과지식을 묻지 않는 문항인 경우에도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진행절차) ① 사정관실에서는 대학교사가 종료된 이후에 선행학습영향평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통해 대학교사 문항 검토·분석 및 평가 등 선행학습영

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행학습영향평가는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3월 중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 전형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이를 위반한 학과의 출제교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신설 2018.04.25.)

제13조(연구 및 평가수당) ① 선행학습영향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설문 및 분석, 연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 및 평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기준은 「입학사정관실 운영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본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4. 25부터 시행한다.